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참고사항 .....                  | 1  |
| IV . 검토의견 .....                   | 2  |
| 1. 지역중소지상과방송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 | 2  |
| [참고] .....                        | 1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9. 6.

다. 회 부 일 : 2024. 9.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IV. 검토의견

### 1.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 현행             | 개정안                                              |
|----------------|--------------------------------------------------|
| ○ 별표 2<br><신설> | ○ 별표 2<br>-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br>(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

현행법 제5조<sup>1)</sup>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 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개정안”이라 함)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각각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법률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기금명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
| 재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li> <li>◦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li> <li>◦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 기금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li> <li>◦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징수한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 승인한 수수료</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ul>                                            |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li> <li>◦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유통구조 개선</li> <li>◦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과 중소지상파방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li> <li>◦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li> <li>◦ 그 밖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ul> |
| 관 리 | ◦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광고<sup>2)</sup>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및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음.<sup>3)</sup>

그런데 현재의 다매체 환경에서는 광고 기획·전략·제작·매체집행 등에 있어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방송통신매체 관련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sup>4)</sup>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의 전반적인 위기와 더불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함)<sup>5)</sup>의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

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4)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중 지역방송에 환원한 수수료는 총 27억 200만원으로, 정부광고 수수료를 재원으로 편성·집행된 2023년 방송분야 지원 사업비 341억원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수료 1,059억 4,200만원 대비로는 2.5% 수준임.

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란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1호, 이하 “정부광고법개정안”이라 함)는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그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up>6)</sup>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전반적인 위기와 더불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징수한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 승인한 수수료를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자들이 미디어 융합에 따른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민을 위한 방송복지의 제공 및 방송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7)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sup>8)</sup>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방송광고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징수한 수수료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원과 용도 간 연관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한 수수료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095억원

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8)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4,200만원으로, 이 중 27%인 295억 9,500만원을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는데<sup>9)</sup>, 정부광고대행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나누어지게 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수수료 규모는 더 작아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금 등에 의존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독립성 및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부광고대행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나누어질 경우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상 독립성 및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축적인 지원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다음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은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sup>10)</sup>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용도로 규정<sup>11)</sup>하고 있어 새로운 기금의 효과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관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년 계획 | 2024년 계획 |
|--------------------------------------------|----------|----------|
| <input type="checkbox"/> 지역·중소방송 콘텐츠경쟁력 강화 | 4,530    | 4,530    |
| ① 프로그램 제작지원                                | 3,900    | 3,900    |
| ②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 360      | 360      |
| ③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 270      | 270      |
| ○ 비목합계                                     | 4,530    | 4,530    |
| ▪ 민간경상보조(320-01)                           | 4,530    | 4,530    |

자료: 기획재정부

-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11)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 지원 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참조

한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부광고의 수수료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시 타 방송사업자·정부광고매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기금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 및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방송사의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매체 전체에 대해 정부광고를 대행할 경우 공정성·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별표 2<br><br><u>&lt;신 설&gt;</u> | 별표 2<br><br>7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              |
|--------------|
| 문의처          |
| 02)6788-5152 |

## 참고 1

## 언론진흥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비교

|            | 언론진흥재단                                                                                                                                                                                                                           | 한국방송광고공사                                                                                                                                                                                                                                                                           |
|------------|----------------------------------------------------------------------------------------------------------------------------------------------------------------------------------------------------------------------------------|------------------------------------------------------------------------------------------------------------------------------------------------------------------------------------------------------------------------------------------------------------------------------------|
| 주무부처       | 문체부                                                                                                                                                                                                                              | 방통위                                                                                                                                                                                                                                                                                |
|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
| 근거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br>(신문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br>(방송광고판매대행법)                                                                                                                                                                                                                                                   |
| 주요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li> <li>■ 언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li> <li>■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li> <li>■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li> <li>■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광고의 판매대행</li> <li>■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li> <li>■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li> <li>■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li> </ul> |
| 임원구성       |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1명                                                                                                                                                                                                          | 이사 11명(사장 1명 포함), 감사 1명                                                                                                                                                                                                                                                            |
| 주요재원       | 정부광고업무대행 수수료*,<br>프레스센터 운영 수입 등<br>* 정부광고료의 10%('23년 약 1,096억원)                                                                                                                                                                  | 방송광고 판매대행 수수료*,<br>방송회관 운영수입 등<br>* 방송사-광고주-광고회사 간 광고판매 대행 수수료(광고비의 2.5%, '23년 176억원)                                                                                                                                                                                              |
| 주요<br>국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진흥기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스정보유통활성화('24년 38억원)</li> <li>-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24년 58억원)</li> <li>-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24년 95억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밀착형 방송광고활성화 기반구축('24년 29억원)</li> <li>-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24년 24억원)</li> <li>-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24년 24억원)</li> </ul> </li> </ul>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 설립</li> <li>■ ('92) 한국언론회관으로 확대 개편, 정부광고 대행업무 실시</li> <li>■ ('99) 한국언론재단으로 개편</li> <li>■ ('10) 신문발전위원회와 통합,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li> <li>■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개편</li> </ul>                                                                                                                                                                              |

## 참고 2

##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사업 개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관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년 계획 | 2024년 계획 |
|--------------------------------------------|----------|----------|
| <input type="checkbox"/> 지역·중소방송 콘텐츠경쟁력 강화 | 4,530    | 4,530    |
| ① 프로그램 제작지원                                | 3,900    | 3,900    |
| ②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 360      | 360      |
| ③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지원                         | 270      | 270      |
| ○ 비목합계                                     | 4,530    | 4,530    |
| ▪ 민간경상보조(320-01)                           | 4,530    | 4,530    |

자료: 기획재정부

### ☐ (사업내용, 2024년 기준)

지역·중소방송사 대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제작지원) TV 프로그램 3,600백만원(24편×150백만원), 라디오 300백만원(10편×30백만원) 제작비 지원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국내외 콘텐츠 마켓, 교류 포럼 참가 및 교류협력 행사 지원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지역·중소방송사 종사자 대상 기획·연출·촬영 등 교육과정 운영

### ☐ (사업기간) 2014년~ (계속)

### ☐ (집행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특수법인)

